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654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1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5년 3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5년 4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실장 여장권)

가. 제안이유

-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(생활도로)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을 조례에 명시(신설) (안 제6조제2항제1호)
-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'서울특별시 중구'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 신설 (안 제6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1. 23. ~ 2025. 2. 12.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 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1천cc 미만의 '경형 승용자동차'와 차량등록지 주소지가 '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'에 대해서 남산 1·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% 감경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남산 혼잡통행료 부과현황

- 혼잡통행료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) 제33조 및 제35조¹⁾를 근거로 1996년 남산 1·3호터널²⁾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 고시³⁾한 후,

1)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
제33조(교통수요관리의 시행)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2.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
제35조(혼잡통행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,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2) 남산 1호터널 및 연결도로 :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~ 남산 1호터널 ~ 한남대로 한남오거리

[(舊)퇴계로 주자동교차로 ~ 남산 1호터널 ~ 한남로 한남교차로]

남산 3호터널 및 연결도로 : 소공로 회현사거리 ~ 남산 3호터널 ~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

[(舊)퇴계로 회현동교차로 ~ 남산 3호터널 ~ 반포로 경리단교차로]

3) <서울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> 서울시 고시 제1996-291호(고시일시 : 1996.10.25.)

-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: 퇴계2가 교차로~남산1호, 남산1호~한남오거리

-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: 회현사거리~남산3호, 남산3호~재정관리단앞 교차로

터널을 진·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나

동일 요금유지 등 교통량 감축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⁴⁾ '23~'24년 약 1년간 양방향 면제, 외곽방향 면제 등 다양한 검토를 시행한 결과 현재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임

※ 참고 :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등 정책실험('23. 3~5월)⁵⁾

- 시민들과 징수 효과 직접 확인(27년 만에 징수 '잠시 멈춤' 실시)
-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 실험 기간별 실험내용과 결과
 - 2023.3.17.~4.16. : 외곽방향 면제(남산터널 통행량 5.2% 증가)
 - 2023.4.17.~5.16. : 양방향 면제(남산터널 통행량 12.9% 증가)
 - 2023.5.17.~ : 징수재개
 - 2024.1.15.~ : 도심방향만 징수(현재 유지 중)

- 한편, 혼잡통행료는 최초 도입 이후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·승합 자동차 등에 대해서 주말,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(오전 7시~오후 9시, 14시간)에 2,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·승합 자동차, 버스, 화물차 등의 경우 전액면제하고 경차(1천 cc 미만)의 경우에는 50%를 감면하고 있음

4) 남산 혼잡통행료 “폐지해야 vs 유지해야” : 조선일보, YTN, 뉴스1 등 다수언론

5) '남산 혼잡통행료 운영방안 개선 계획' 교통정책과-123(2024. 1. 3.)

※ 참고 :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 대상

면제 대상 및 차량(11종)	50% 감면 차량
면제대상 :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·승합자동차 등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 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·2종 저공해자동차 ⑪ 서울시 소재 다자녀 가족 소유 자동차 (둘째 18세이하 '24. 8. 21. 면제)	경형승용차(1,000cc미만)

■ 혼잡통행료의 감면 등(안 제6조)

- 현행 조례에서는 혼잡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 현장에서는 법 제35조제3항6)에 따라 1천cc 미만 경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50%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임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혼잡통행료 운용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
- 또한,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 주소지가 혼잡통

6)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5조(혼잡통행료의 부과·징수 등)

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,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③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
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신설하는 것임

- 참고로 중구청에 등록된 차량은 총 51,221대이며 이중 자가용(승용·승합·화물 등)은 전체 등록 차량의 91%(46,708대)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실제 남산 1·3호 터널을 통행하여 징수된 중구 거주지 차량은 8,586대⁷⁾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실제 통행량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임

※ 참고 : 중구청에 등록된 승용·승합·화물·특수(관용, 자가용, 영업용) 현황

(2025. 3월 기준 / 단위 : 대)

구 분	합 계	승용	승합	화물	특수
관용	1,300	288	813	175	24
자가용	46,708	40,199	1,703	4,581	225
영업용	3,213	1,657	248	1,205	103
합계	51,221	42,144	2,764	5,961	352

- 법 시행규칙 제3조⁸⁾(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)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시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하도록

7) 의안번호 2654)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

<남산 1·3호 터널 통행량 중 징수차량 거주지별 분석>

(단위 : 대)

구분	합계	서울				경기	인천	기타 (수도권 외)
		소계	중구	용산	기타			
통행량 (‘24.6월 기준)	251,433 (100%)	110,990 (44.1%)	8,586 (3.4%)	6,406 (2.5%)	95,998 (38.2%)	54,247 (21.6%)	22,576 (9.0%)	63,620 (25.3%)

- 중구 거주지 차량에 대한 50% 감면에 따른 비용추계 : 8,586대 × 1,000원 × 12개월 = 103,032,000원

- 8) 「도시교통정비 촉진 시행규칙」 제3조(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)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2.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

규정하고 있고 양방향으로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도심방향 부과로 변경되었으며

해당 지역 주민들의 감면 요구⁹⁾가 지속적으로 요청된 것을 고려할 때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해 일부 감면하는 것은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받은 거주민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- 한편,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'25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, 이는 남산 1·3호 터널을 이용하는 중구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한 시스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, 향후 동 조례개정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

9) '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요청' 중구 교통행정과-92896(2023. 9. 14.)

- 도심 혼잡지역 거주민의 남산1·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

'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개선 민원 이첩' 중구 교통행정과-110921(2023. 11. 9.)

- 남산 1·3호터널 인근 거주 중구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폐지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(생활도로)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을 조례에 명시(신설) (안 제6조제2항제1호)
- 나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'서울특별시 중구'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(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) 신설 (안 제6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1. 23. ~ 2. 1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(☎ 2133-222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07:00~21:00시”를 “07:00~21:00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9호 중 “별표1”을 각각 “별표 1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 자동차
2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 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는 <u>07:00 ~ 21:00</u> 시로 한다. 다만,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4조(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) ① ----- <u>07:00 ~ 21:00</u>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혼잡통행료의 감면)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6조(혼잡통행료의 감면) ① 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<u>별표1</u> 에 따라 경형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	8. ----- <u>별표 1</u> -----
9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<u>별표1</u> 에 따라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	9.----- <u>별표 1</u> -----
10. · 11. (생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/u>

1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
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
용 자동차

2.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
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
소재지인 ‘서울특별시 중구’의
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
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
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
다)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중구 거주민 개인소유 자동차(법인, 임대자동차 제외)의 혼잡통행료 100분의 50 감면

개정안 : 차량등록지(사용본거지)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'서울특별시 중구'의 개인소유 자동차(다만, 법인소유 자동차, 임대 자동차 등 개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)

※ 개요 : 남산 1,3호 터널 통과시 2인 이하 탑승 자동차, 1회당 2,000원 부과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분석 : 남산 1,3호 터널 통행량중 징수차량 거주지별 분석

(단위 : 대)

구분	합계	서울				경기	인천	기타 (수도권 외)
		소계	중구	용산	기타			
통행량 ('24.6월 기준)	251,433 (100%)	110,990 (44.1%)	8,586 (3.4%)	6,406 (2.5%)	95,998 (38.2%)	54,247 (21.6%)	22,576 (9.0%)	63,620 (25.3%)

$$- 8,586\text{대} \times 1,000\text{원} \times 12\text{개월} = 103,032,000\text{원}$$

※ 중구 거주지 차량중 경형자동차(1,000원), 법인 및 임대 자동차도 있을 수 있어, 세입 감소율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수입	혼잡통행료	60,102	103,032	103,032	103,032	103,032	472,230

※ 시행예정일 : 2025.6.1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사항 없음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교통실 교통정책과 박진희(☎ 2133-2223)